

구미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

구 미 시

구미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 : 2026. 6. .

제출자 : 구미시장

1. 제안이유

장난감도서관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에 따라 회원가입 및 연회비 규정을 정비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도서관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회원의 정의 및 통합회원 가입에 관한 사항(안 제2조, 제5조)

나. 연회비에 관한 사항(안 제8조, 제9조)

- 시설회원 연회비 인하 : (당초) 50,000원 → (변경) 30,000원
- 연회비 체계 일원화를 위한 예외 규정 삭제, 연회비 면제 규정 정비

다. 위탁운영자 선정에 관한 사항 및 용어 등 정비(안 제3조, 제13조, 제18조)

3. 조례안 : 붙임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영유아보육법」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감사담당관, 정책기획과와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(붙임)

구미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구미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3호 중 “장난감도서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등록한”을 “구미시 육아종합지원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의 통합회원으로 가입한”으로 한다.

제3조 본문 중 “구미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”를 “구미시”로, “구미시”를 “구미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”로 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회원으로 등록”을 “센터의 통합회원으로 가입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한다.

제8조제2항 본문 중 “50,000원”을 “30,000원”으로 하고,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.

제9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3.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가족

제13조 중 “재정부담능력(자부담 10% 이상)”을 “재정부담능력”으로 한다.

제18조 중 “「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”를 “「구미시 사무위탁 조례」”로 한다.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2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연회비 등에 관한 적용례) 제8조 및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연회비를 납부하거나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·2. (생략)</p> <p>3. “회원”이란 제5조에 따라 <u>장난감도서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등록한 자</u>를 말한다.</p> <p>4. (생략)</p> <p>제3조(설치) <u>구미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 장난감도서관(이하 “장난감도서관”이라 한다)</u>은 <u>구미시 관내</u>에 둔다. 다만, 원거리에 거주하는 주민을 위하여 이동 장난감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다.</p> <p>제5조(회원가입) ① 장난감도서관을 이용하려는 자는 <u>회원으로 등록</u>하여야 한다.</p> <p>② 회원가입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u>단, 구미시 육아종합지원센터(이하“센터”라 한다) 내 장난감도서관은 센터 회원가입 규정에 따른다.</u></p> <p>1.·2. (생략)</p> <p>제8조(연회비) ① (생략)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·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----- <u>구미시 육아종합지원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의 통합회원</u>으로 가입한 -----.</p> <p>4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3조(설치) <u>구미시</u> ----- ----- ----- <u>구미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</u> ----- -----.</p> <p>제5조(회원가입) ① ----- ----- <u>센터의 통합회원</u>으로 가입-----.</p> <p>② ----- ----- <u><단서 삭제></u></p> <p>1.·2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8조(연회비) ① (현행과 같음)</p>

② 제1항에 따른 연회비는 일반 회원 20,000원, 시설회원 50,000 원으로 한다. 단, 센터 내 장난감도서관은 센터 연회비 가입으로 한다.

③ (생략)

제9조(연회비 면제) 제8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회비를 면제할 수 있다.

- 1. 2. (생략)
- 3.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
- 4. ~ 8. (생략)

제13조(위탁운영자 선정) 시장은 위탁운영자를 선정할 때에는 위탁운영에 필요한 인력·장비·시설 및 재정부담능력(자부담 10% 이상)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구미시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.

제18조(준용) 이 조례에서 위탁계약과 관련하여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다.

② -----
----- 30,000
원----- . <단서 삭제>

③ (현행과 같음)

제9조(연회비 면제) -----

----- .

- 1. 2. (현행과 같음)
- 3.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가족
- 4. ~ 8. (현행과 같음)

제13조(위탁운영자 선정) -----

----- 재정부담능력 -----

----- .

제18조(준용) -----

----- 「구미시 사무위탁 조례」----- .

관계법령

□ 「영유아보육법」

제4조(책임) ① 모든 국민은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,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③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절한 어린이집을 확보하여야 한다.

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육교직원의 양성, 근로여건 개선 및 권익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 보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·추진하고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.

소 관 부 서		아이돌봄과
입 안 자	과 장	박 용 자
	팀 장	이 수 경
	담 당 자	박 명 희 (480-6572)